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3월 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3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6. 3. 14) 상정
- 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6. 3. 14)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과장 조 재 형)

가. 제안이유

-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원회에서는 시정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사항,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및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사항 등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3조)
-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하도록 변경함.(안 제4조제1항)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획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정함.(안 제6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시 간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바, 향후 관련 분야별 전문 인사의 위촉 의향은 없는지?</p>	<p>○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문가 등 관련 인사의 위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82호
의결 년월일	2006. 3. 17 (제125회)

제출년월일 : 2006. 3. 8.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위원회에서는 시정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사항,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및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사항 등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하도록 변경함.(안 제4조제1항)
- 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획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정함.
(안 제6조)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명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시에 조정위원회”를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의하여 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이 호에서 “위원회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사항

제4조제1항 본문중 “매주 화요일에”를 “주 1회”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중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u></p>	<p><u>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u></p>
<p>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u>조정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조(목적) ----- ----- ----- ----- ----- <u>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u>----- -----.</p>
<p>제3조(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u> 2. <u>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u> 3. <u>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u> 4. <u>이의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u> 5. <u>국공유 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u> 6. <u>행정 사무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u> 	<p>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u> 2. <u>법령에 의하여 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이 호에서 “위원회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u> 3. <u>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u> 4. <u>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사항</u>

현행	개정안
7. 제안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 서 처리할 사항	
8. 농지확대 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화정정리에 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전정리심의위원 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처리 할 사항	
12. 법령에 규정된 시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 항	
13. 지방세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처리 할 사항	
14. 농지 개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p>15. <u>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0조</u> <u>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실천</u> <u>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p> <p>16. <u>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 관한 법</u> <u>률 제10조 규정에 의한 물가안</u> <u>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p> <p>17. <u>국무총리 훈령 제138호에 의</u> <u>한 어선안전협의회에서 처리할</u> <u>사항</u></p> <p>18. <u>소비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u></p> <p>19. <u>향토유적보호조례 제3조 규</u> <u>정에 의한 향토유적보호위원회</u> <u>에서 처리할 사항</u></p> <p>20. <u>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u> <u>발전에 관한 사항</u></p> <p>21. <u>중요소송 지정 및 대책 등에</u> <u>관한 사항</u></p> <p>22. <u>기타 시장의 결실을 요하는</u> <u>중요정책에 관한 사항</u></p>	
<p>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u>매주 화요</u> <u>일에</u>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 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⑦(생략)</p>	<p>제4조(회의) ①----- <u>주 1회</u> - ----- ----- ----- ②~⑦(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간사장)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p> <p>②간사장은 기획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사무를 처리한다.</p> <p>③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p>	<p>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담당과장이 된다.</p>
<p>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실비변상)----- ----- -----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 --.</p>